

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오현정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6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발 의 자 : 오현정, 박기재, 권영희,
이정인, 홍성룡, 김정태,
김호평, 강동길, 권순선,
김소영, 이병도, 이승미,
송재혁, 김재형, 신정호,
김제리, 한기영, 이광성,
송정빈, 이동현, 이상훈,
김상훈, 김혜련, 봉양순 의원
(24명)

1. 제안이유

- 안전망 병원은 건강보험 말소 등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(무료진료기관)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임.
-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 자치단체장이 민간의료기관과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이에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안전망병원의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.
- 그러나 기존 조례에서는 안전망병원의 사업을 위한 협약대상기관을 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음. 그러나 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이 폐업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필요한 협약대상의 민간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임. 이에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협약대상 민간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
- 더욱이 안전망병원의 사업범위를 산업재해의 예방 및 산업재해보상의 지원사업까지 확대하여 특고 등 산업재해보험 대상자의 산업재해보험

의 가입율을 높이고 산업재해와 관련한 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2조제3호를 개정하여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민간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함.

나. 제5조제1항제5호를 개정하여 안전망병원이 산업재해의 예방 및 산업재해보상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안전망병원”이라 함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으로 다음의 각 목과 같다.

제2조제3호가목 중 “민간의료기관(무료)이란”을 “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(이하 ‘민간의료기관(무료)’이라 한다)으로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산업재해의 예방 및 산업재해보상의 지원 사업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3. <u>“안전망병원”이라 함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의 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(이하 ‘민간의료기관(무료)’이라 한다) 등과 이와 연계되는 공공의료기관을 말한다.</u></p> <p>가. <u>민간의료기관(무료)이란 의료보장제도 및 공공의료기관의 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속적인 무료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</u></p> <p>나.·다. (생 략)</p> <p>제5조(기능) ① 안전망병원으로서 민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5. (생 략)</p> <p>②·③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“안전망병원”이라 함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으로 다음의 각목과 같다.</u></p> <p>가. <u>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(이하 ‘민간의료기관(무료)’이라 한다)으로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나.·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기능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산업재해의 예방 및 산업재해보상의 지원 사업</u>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